

## 2021년 일터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고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에서는 「2021년 일터 평생 학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직장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0일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장

### 1. 사업목적

- 강원도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참여계기를 마련
- 직장에 자기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평생학습 운영을 지원하고 직장 내 소통 활성화 기대

2. 접수기간 : 2021. 5. 10.(월) ~ 5. 14.(금) 18시

3. 사업기간 : 2021. 5. ~ 10월

### 4. 모집개요

- 모집규모 : 4개 직장 / 직장별 최대 2,000천원
  - 모집대상 : ①, ②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직장
    - ① 강원도 소재 직장(기업·기관·단체)
    - ② 15인 이상의 학습단체를 구성한 기업 또는 기관·단체
- ※ 15인 이하의 직장일 경우 2개 이상의 직장 간 협약 후 단체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주요내용 : 자체 기획한 직장 및 근로자 맞춤형 평생교육과정 운영 지원

평생학습 유형	주요내용(예시)
기초문해	근로자의 문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기초생활기술 교육과정
	예시)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 다문화교실, 생활문해(스마트폰, 기초컴퓨터, 키오스크 등)
인문교양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겸비하고 근로자들의 교양증진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예시) 인문학 강좌, 행복학 강좌, 상담치료, 생활의료교육
직업능력	근로자들이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
	예시) 자격증취득과정, 외국어자격인증, 판로확장교육, 현장직무역량교육
문화예술	근로자들의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취미, 여가활동, 소질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예시) 문학강좌, 생활체육, 생활공예, 미술치료, 요리교실
시민참여	현대 민주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직장 내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정신 증진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예시) 전염병 방지를 위한 시민의식교육, 양성평등교육, 조직리더 양성교육

## 5.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신청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접사업비

- (가능항목)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방역물품 구입비 ※ 세부기준과 단가는 [참고] 확인

지원항목	주요내용
강사비	강좌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내부직원은 강사비 제외)
교재비	강좌 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교재 구입비용
재료비	강좌 운영을 위한 재료비(사무용품 구입비 제외)
방역물품 구입비	강좌 운영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제한항목) 직원인건비, 건물 신·증개축, 자산취득비 등

제한항목	주요내용
다과, 식비	교육과정 중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다과, 식사비용
사무실 운영경비	직원급여, 사무실 임대료, 시설 유지비 등
행사부대경비	단체복,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등
기타운영비	기타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운영경비

- 지원제외 교육과정
  - 직장의 이익을 위한 사업 또는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위한 교육과정
  - 친목 도모를 위한 단순 동호회교육과정이나 1회성 교육과정
  -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교육과정

## 6. 접수방법

- 접수기간 : 5. 10.(월) ~ 5. 14.(금)
-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한글파일 접수 후 직장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서류는 우편·방문접수
  - (전자우편)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의 한글문서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 (우편·방문) 전자우편으로 접수한 모든서류의 원본을 마감일까지 우편·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사업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학습자 명단
  - 사업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 제출처
  - (전자우편) [mkjang@rig.re.kr](mailto:mkjang@rig.re.kr)
  - (우편·방문) 24461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2, 202호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일터 평생학습 지원사업 담당자 앞

## 7. 선정발표

- 선정방법 : (1차) 적격여부 심사 → (2차)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 선정기준 : 사업추진의 필요성, 실행가능성 및 지속성, 예산 및 성과 관리
- 결과발표 : 5월 4째 주 예정 / 강원도평생교육정보망 게시, 개별 유선통보
- 보조금 교부 : 6월 초 예정 / 진흥원에서 직장 보조금 계좌로 사업비 전액입금

## 8. 추진일정



## 9. 유의사항

- 사업심의를 거친 후 신청금액이 조정되어 보조금이 교부될 경우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안내 예정)
- 사업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와 예산 산출은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직장은 진흥원 주최행사(착수협의회, 성과공유회 등)에 필수 참석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2021년 강원도 평생교육 공모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환수합니다.
- 문의처 :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운영팀 장민경, ☎ 250-2954

## 참고 예산 관련 유의사항

### □ 예산지원항목

항목	세부내용	비고
강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li> <li>강사비 단가는 강사비 지급기준 참조하여 책정</li> <li>교통비(실비) 별도 책정 가능 ※ 식비, 일비는 불가능</li> </ul>	내부직원 강사비 제외
교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좌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구입 비용</li> <li>시판 교재일 경우 학습자의 130퍼센트까지 가능</li> <li>재본 교재일 경우 학습자의 150퍼센트까지 가능</li> <li>교재 배송료도 포함하여 편성가능</li> </ul>	학습자 20명일 때 · 시판교재 : 26권 가능 · 재본교재 : 30권 가능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비</li> <li>재료는 학습자의 130퍼센트까지 가능</li> <li>재료 배송료도 포함하여 편성가능</li> </ul>	
방역물품 구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좌운영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용</li> <li>교육 중 소진가능한 품목만 가능, 자산성 물품 구입제외 ※ 일회용 품목은 1회당 강사 포함 참가인원의 130%까지 구입 가능</li> </ul>	<b>방역물품 구입비용은 진흥원 보조금의 10%를 넘을 수 없음.</b>

※ 자산성 교육재료(운동기구, 악기 등)은 가급적 학습자 자부담으로 하고 **부득이 사업비로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 종료 후 학습자에게 배부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수령자가 자필 서명한 배부대장(별도 서식 송부)을 제출해야 함.

※ 모든 예산항목은 과다책정, 책정오류 등에 대한 진흥원에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된 직장은 심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 예산편성관련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함.  
**즉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 강사비 지급기준(강원도인재개발원 기준에 준함)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li> <li>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li> <li>기업 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li> <li>대학총장(장관급)</li> <li>국회의원*</li> </ul>	40	30(20*)
특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직 차관(급)</li> <li>전직 공기업 대표</li> <li>전직 기초자치단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li> <li>기초자치단체장</li> <li>공직유관단체장</li> </ul>	30	20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직 4급 이상 공무원</li> <li>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li> <li>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인사</li> <li>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li> <li>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li> <li>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li> <li>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li> <li>(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li> <li>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급이상 공무원</li> <li>지방의회의원</li> <li>대학의 교수</li> <li>공직유관단체 임원</li> <li>(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li> <li>연론인</li> </ul>	25	12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직 5급 이하 공무원</li> <li>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li> <li>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li> <li>원어민 어학 강사</li> <li>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급이하 공무원</li> <li>대학의 강사 등</li> <li>공직유관단체 직원</li> </ul>	15	8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어, 전산 등 강사</li> <li>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공무원</li> <li>교육기관 3년 이상 강의 경력자</li> </ul>		10	5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li> </ul>		8	4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li> </ul>		6	3

- ※ 1. 기준표에 준하여 강사로 지급하며 위 강사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한 경우 사전협의 후 별도지급 가능  
 2.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강원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  
 3. 단체소속 임·직원, 회원이 강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강사로 지급하지 않음  
 4. 관외 강사에 대한 교통비는 대중교통(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준의 실비수준으로 지급 가능  
 5. 위 사항 중 정해지지 않은 기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으로 유선문의 요망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 코로나-19관련 유의사항

- 방역물품(소모성물품)은 강사포함 1회당 참가인원의 130%까지 구입 가능
- 다수가 사용하는 손소독제, 세정제 등은 5회 기준 1개까지 구입 가능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중 식사 및 다과제공은 최대한 지양바람

## □ 기타사항

- 선정 직장은 사업운영을 위해 별도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보조금 통장 개설시 반드시 직장명으로 개설하되, 직장 대표자의 이름으로 개설 할 경우 반드시 괄호에 기관명 명시 (예시) 홍길동(00사)
- 보조금은 「2021년 강원도 평생교육 공모사업 운영지침」에 맞게 집행과 정산을 해야합니다. 또한, 강사료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이와 관련한 운영지침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포괄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 불가합니다.  
※ (예시) 재료비 × 1식 = 지출금액(X), 재료비(금액) × 참가인원 × 진행횟수 = 지출금액(0)
- 사업비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지출함이 원칙이며, 예산전용은 사전에 변경사용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된 건만 인정합니다. 또한, 예산변경은 사업 종료 2주 전까지만 요청 가능합니다.

붙임 : 2021년 일터 평생학습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